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95
------	----

2002. 12.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1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2002년 12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원세훈)

가. 폐지 이유

- 우리시 산하 지하철공사 등 6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02.3.25, 법률 제6665호)되어 시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기관이 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종)

《총괄부문》

-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2002. 3. 25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기관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 전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319개의 지방공기업이 직영형태(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간접형태(공사, 공단, 주식회사)로 존치되어 있고, 시·도별로 보면 서울 17개, 경기도 83개, 강원도 31개, 경남·북 각각 26개로 광역시보다는 도(道)가 압도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부실과 자리채우기로 문제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기업수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지방공기업의 부실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경영·투자 마인드 부족에 기인하지만 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집중, 규제, 열악한 지방재정에 그 해결책이 보인다고 하겠으며, 2001년도 결산기준의 총 276개중 흑자공기업 161개, 적자공기업 108개로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으로 보면 흑자공기업이 더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에 조례폐지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자부 장관으로 변경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중시한다면 국영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재경부장관이 쥐고 있고 그것도 정부 각부처의 자료제공 여부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실제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에 대한 1차 경영평가주체를 광역 시·도로 하고 광역시·도 산하의 공기업은 행자부보다는 차라리 관련부처(예를 들면, 지하철은 건설교통부, 상수도는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식으로)가 하는 것이 전문성과 객관·투

명성이 확보된다고 보며, 이런 식의 개정은 행자부의 자리 지키기 또는 영역 확보라는 동물적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경영평가 및 진단도 행자부 산하의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전국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에서 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중 “15,931명”을 “15,88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064명”을 “5,016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5,818명”을 “15,883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0,256명”을 “10,285명”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4,980명”을 “5,016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중 5명(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수행 인력)은 2003년 7월 31일까지, 22명(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원인력 7명,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